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Abc-36BL)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666-004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6.06.23.)로부터 3년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05.(금)	2026.07.16.(목)	2026.07.21.(화)	2026.07.24.(금)	2026.07.26.(일) ~ 2026.07.27.(월)	2026.07.31.(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6.(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80**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3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21.(화)	2026.07.24.(금)	2026.07.26.(일) ~ 2026.07.27.(월)	2026.07.31.(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발표일(2026.06.23.)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여 3년간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 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 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으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 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재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11개동 총 743세대 중 잔여 192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 표기)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80	01	084.9343A	84A	114	3601	403, 603, 1103, 1203, 404
					3602	203, 403, 503, 603, 903, 1403, 2003
					3603	101, 301, 601, 701, 901, 1501, 1601, 1701, 1403, 1803, 1903
					3604	101, 201, 401, 601, 901, 1301, 1401, 302, 402, 502, 602, 702, 1202, 603, 404, 604, 804, 1004
					3605	202, 302, 402, 602, 702, 802, 403, 503, 1203, 1403, 1803
					3609	101, 201, 301, 401, 501, 601, 701, 1101, 1601, 202, 402, 502, 702, 1202, 1402, 1502, 303, 1003, 104, 204, 604, 1004
					3610	101, 201, 301, 501, 701, 901, 1001, 1501, 1601, 102, 302, 602, 1002, 1402, 403, 603, 1503, 404, 604, 1004, 1104, 1304, 1504
		3611	101, 201, 901, 1301, 1501, 202, 302, 802, 902, 1002, 1402, 1502, 403, 603, 1103, 1303, 1204			
	02	094.3143A	94AT	1	3610	103
	03	094.2875B	94BT	5	3601	202, 302
					3605	104, 304
					3606	104
	04	094.3805D	94DT	4	3601	305
					3602	105
					3603	705
					3606	301
	05	101.8311A	101A	68	3601	301, 401, 601, 801
					3602	101, 301, 801, 901, 1201, 1401, 1501, 1601, 1701, 404, 504, 1204
					3603	404, 904, 1004, 1104
					3605	105, 305, 405, 505, 605, 705, 805, 1505, 1705
					3606	602, 902, 1002, 1702, 403, 703, 803, 1103, 1303, 1503, 205, 405, 505, 605, 705, 805, 1205, 1305, 2005
					3607	401, 601, 901, 402, 602, 802, 902, 803, 1103, 404, 804, 1204
					3608	402, 502, 602, 503, 603, 703, 404, 504
	합 계				192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343A	094.3143A	094.2875B	094.3805D	101.8311A
약식표기	84A	94AT	94BT	94DT	101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은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 바 청약 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람.

(약식표기는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상의 표시 방식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지정일
										계약 시	2026.09.10.	2027.02.11.	2027.06.10.	2027.11.10.	2028.05.10.	
084.9343A	84A	114	3601동 3,4호 3602동 3호 3603동 1,3호 3604동 1,2,3,4호 3605동 2,3호 3609동 1,2,3,4호 3610동 1,2,3,4호 3611동 1,2,3,4호	10~20층	42	205,894,800	381,405,200	-	587,300,000	10,000,000	19,365,000	88,095,000	88,095,000	88,095,000	88,095,000	205,555,000
				5~9층	35	205,894,800	369,605,200	-	575,500,000	10,000,000	18,775,000	86,325,000	86,325,000	86,325,000	86,325,000	201,425,000
				4층	13	205,894,800	357,905,200	-	563,800,000	10,000,000	18,190,000	84,570,000	84,570,000	84,570,000	84,570,000	197,330,000
				3층	8	205,894,800	346,105,2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193,200,000
				2층	9	205,894,800	334,405,200	-	540,300,000	10,000,000	17,015,000	81,045,000	81,045,000	81,045,000	81,045,000	189,105,000
				1층	7	205,894,800	322,605,200	-	528,500,000	10,000,000	16,425,000	79,275,000	79,275,000	79,275,000	79,275,000	184,975,000
094.3143A	94AT	1	3610동 3호	1층	1	228,633,400	294,424,182	29,442,418	552,500,000	10,000,000	17,625,000	82,875,000	82,875,000	82,875,000	82,875,000	193,375,000
094.2875B	94BT	5	3601동 2호 3605동 4호 3606동 4호	3층	2	228,568,600	316,574,000	31,657,400	576,800,000	10,000,000	18,840,000	86,520,000	86,520,000	86,520,000	86,520,000	201,880,000
				2층	1	228,568,600	305,483,091	30,548,309	564,600,000	10,000,000	18,230,000	84,690,000	84,690,000	84,690,000	84,690,000	197,610,000
				1층	2	228,568,600	294,483,091	29,448,309	552,500,000	10,000,000	17,625,000	82,875,000	82,875,000	82,875,000	82,875,000	193,375,000
094.3805D	94DT	4	3601동 5호 3602동 5호 3603동 5호 3606동 1호	5~9층	1	228,793,800	326,551,091	32,655,109	588,000,000	10,000,000	19,4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205,800,000
				3층	2	228,793,800	304,914,727	30,491,473	564,200,000	10,000,000	18,210,000	84,630,000	84,630,000	84,630,000	84,630,000	197,470,000
				1층	1	228,793,800	283,823,818	28,382,382	541,000,000	10,000,000	17,050,000	81,150,000	81,150,000	81,150,000	81,150,000	189,350,000
101.8311A	101A	68	3601동 1호 3602동 1,4호 3603동 4호 3605동 5호 3606동 2,3,5호 3607동 1,2,3,4호 3608동 2,3,4호	10~20층	20	246,855,400	391,949,636	39,194,964	678,000,000	10,000,000	23,9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237,300,000
				5~9층	31	246,855,400	379,586,000	37,958,600	664,400,000	10,000,000	23,220,000	99,660,000	99,660,000	99,660,000	99,660,000	232,540,000
				4층	11	246,855,400	367,222,364	36,722,236	650,800,000	10,000,000	22,540,000	97,620,000	97,620,000	97,620,000	97,620,000	227,780,000
				3층	3	246,855,400	354,949,636	35,494,964	637,300,000	10,000,000	21,865,000	95,595,000	95,595,000	95,595,000	95,595,000	223,055,000
				2층	1	246,855,400	342,586,000	34,258,600	623,700,000	10,000,000	21,185,000	93,555,000	93,555,000	93,555,000	93,555,000	218,295,000
				1층	2	246,855,400	330,313,273	33,031,327	610,200,000	10,000,000	20,510,000	91,530,000	91,530,000	91,530,000	91,530,000	213,57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모계좌)	KB국민은행	956801-00-017485	한국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가상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시 : 360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입금자명 : 36010101홍길동) 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가능날짜는 별도 통보 예정.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7.02.11.	입주지정일
084.9343A	84A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094.3143A	94AT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094.2875B	94BT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094.3805D	94DT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101.8311A	101A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6.0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분					납부일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모계좌)	중도금, 잔금(가상계좌)		계약 시	2027.02.11.	입주지정일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KB국민은행	956801-00-017498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한국자산신탁(주)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80%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포함)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360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입금자명 : 360101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품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6.0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24.(금) ~ 2026.08.02.(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2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제출 일정	- 2026.07.26.(일) ~ 2026.07.27.(월)
제출 장소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유의 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당첨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발급용/대리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 참고하여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당첨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외 제3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 인감증명서(당첨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6.07.31.(금) 10:00 ~ 16:00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031) 666-0045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자격검증서류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계약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서류접수 시 제출한 경우 제외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무통장 입금증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계약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상호	우미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이에스아이(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66(권선동)
법인등록번호	205211-0001385	110111-0002694	130111-0014819
연락처	1588-9707	02-2154-1114	031-224-4127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고
031-666-0045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https://pg1.lynn.co.kr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